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8. 30.(수)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303
발의일자	2023. 8. 17.
회부일자	2023. 8. 2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중찬)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경상북도교육감

2. 제안이유

-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족간의 대화 부족, 개인주의 영향 등으로 자살 및 자해 학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2020년 4월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 남서부센터, 2022년 4월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 동북부센터 2개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최근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상담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등으로 인해 센터 운영이 어렵고, 즉각적인 지원과 학교 방문 상담 등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과 질 높은 정신건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북부권에 1개소를 증원하여 민간위탁 3개 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업명: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 위탁 기간
 - 2024. 4. 1. ~ 2026. 12. 31.(2년 9개월, 2개소)
 - 2024. 1. 1. ~ 2026. 12. 31.(3년, 1개소)

- 위탁 기관수: 3기관
- 위탁 대상: 미정
- 사업비: 금3,825,000,000(금삼십팔억이천오백만원)
 - (기존) 2개소: 2,475,000천원
 - (신규) 1개소: 1,350,000천원
- 사업대상: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자살(시도) 및 자해 등 위기 학생
 - 자살 사망으로 위기가 발생한 학교
 - 학교 적응 및 마음 건강 상태 어려움이 발견된 학생
 - 관심군, 고위험군, 정상군 학생에 대한 정서 지원
- 사업 내용
 - 학교(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방문 맞춤형 위기관리
 -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역량 강화
 - 마음건강 인식 개선
 - 생명사랑 문화 정착

4. 관계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2조의 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 관리), 제2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경상북도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 남서부센터(2020년 4월 개소), 동북부센터(2022년 4월 개소)가 2024년 3월말로 사업이 종료되고,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북부권 1개소를 추가로 개설하여 민간위탁 3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및 제23조,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경상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3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사항임.
- 현재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2개소는 영남대학교병원과 민간위탁 계약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중임.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현황]

순	센터명	운영기간, 위탁기관	직원현황		관할지역
1	생명사랑 남서부센터 (20.4.1.개소)	20. 4. 1.~ 24. 3. 31.(4년) 위탁기관:영남대학교의료원	전문의: 2명 임상심리사: 4명 사회복지사: 1명 심리상담사: 1명	8명	구미, 칠곡, 성주, 고령, 김천, 상주, 문경, 예천, 의성, 안동, 봉화, 영주 (12지역)
		▷ 센터위치: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52-7번지 2층 201호 (053) 218-1396			
2	생명사랑 동북부센터 (22.4.1.개소)	22. 4. 1~24. 3. 31.(2년) 위탁기관:영남대학교의료원	전문의: 2명 임상심리사: 3명 사회복지사: 3명	8명	포항, 경산, 경주, 영천, 영덕, 청송, 영양, 울진, 청도, 울릉 (10지역)
		▷ 센터위치: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로 65 인덕패밀리타운 306호 (054) 610-1396			

※ 전문의 2명중 1명은 2개의 센터를 총괄

-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은 유형별로는 위탁형, 위촉형, 채용형이 있으며, 전국 시도교육청 현황은 다음과 같음.

[시도교육청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 거점센터 현황]

(2023. 8. 1. 기준)

구분	시도	운영형태	거점센터 수(개)	전문의(명)
1	서울	위탁형	4	9
2	부산	위촉형	1	15
3	대구	위탁형	4	4
4	인천	위탁형	1	1
5	광주	위촉형	1	3
6	대전	위탁형	1	8
7	울산	위촉형	1	4
8	세종	위탁형	1	1
9	경기	위탁형	6	8
10	강원	위탁형	3	3
11	충북	채용형/위촉형	2	3
12	충남	위탁형	2	2
13	전북	위탁형	2	3
14	전남	기타형(위탁, 위촉형)	3	9
15	경북	위탁형	2	4
16	경남	위촉형	1	13
17	제주	채용형	1	1
합계	총 17지역		36개	91명

※ 17지역: 위탁 10지역, 위촉 4지역, 채용 1지역, 채용/위촉 1지역, 기타형(위탁, 위촉형) 1지역

- 채용형: 시도교육청에서 정신건강전문의와 전문가 등 전담직원 직접 채용하여 운영
- 위탁형: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이 있는 대학병원, 병원형 Wee센터 등에 시도교육청이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 거점센터’ 역할을 위탁하여 운영
- 위촉형: 지역에서 활동 중인 정신건강전문의, 전문가 등을 시도교육청에서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사업 담당 인력으로 위촉하고, 위기 학생이 의뢰 시 위촉의 지원

- 도내 학생 자살·자해 학생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학생들의 우울 및 불안 심리 가중으로 생명사랑센터 학생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음. ([붙임1] 참조)

[최근 5년간 학생 자살·자해 시도 현황]

구 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8.
계	229건	199건	130건	227건	324건

-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정신건강분야 사업으로,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인력과 전문 지식 및 기술 등을 활용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내실있는 운영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탁 기관의 과업이행 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 집행 및 정산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1】 2021~2023년도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적

□ 생명사랑센터 방문 실적

1. 2022년도 생명사랑센터(남서부, 동북부) (2022. 1.~2022 12.)

사업내용		사업대상	목표(건)	실제(건)	달성률(%)
학교 방문 위기 관리	학교 방문을 통한 학생 심층평가	학생, 학부모, 교사	200건	181건	91
	마음건강 전문의 주도 사례회의	학생, 학부모, 교사	40건	48건	120
	센터 의뢰학생, 전문기관 연계지원 및 지속관리	학생	160건	271건	169
		학부모, 교사	80건	614건	768
	마음건강 전문의 학교 방문 자문	학부모, 교사	40건	47건	118
	자살(자해) 시도 학생 전문기관 연계 및 지원	학생	100건	192건	192
	학생 사망 사후 위기개입 및 상담	학생, 학부모, 교사	수시	5건	-
사전 예방	전문의 주도 마음건강교육(전문의 학교 방문 교육)	학부모, 교사	20건	24건	120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교육	실무자	8건	7건	88
	학교·학년별집단 프로그램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생명 사랑 의식 함양	120건	185건	154
	청소년 자해예방 및 생명존중인식도검사(ASAP)	학생	3건	9건	300
자료개발	마음건강 및 극단적 선택 예방 교육자료개발	학생, 교사	2건	2건	100

2. 2023년도 생명사랑센터(남서부, 동북부) (2023. 1.~2023 8.)

사업내용		사업 대상	목표(건)	실제(건)	달성률(%)
학교 방문 위기 관리	학교 방문을 통한 학생 심층평가	학생, 학부모, 교사	200건	192건	96
	마음건강 전문의 주도 사례회의	학생, 학부모, 교사	40건	44건	110
	센터 의뢰학생, 전문기관 연계지원 및 지속관리	학생	160건	199건	124
		교사	40건	252건	630
		학부모	40건	298건	745
	마음건강 전문의 학교 방문 자문	학생, 학부모, 교사	40건	90건	225
	자살(자해) 시도 학생 전문기관 연계 및 지원	학생	100건	192건	192
	학생 사망 사후 위기개입 및 상담	학생, 학부모, 교사	수시	12건	-
사전 예방	전문의 주도 마음건강교육(전문의 학교 방문 교육)	교사	40건	174건	435
		학부모	40건	133건	333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교육	실무자	8건	5건	63
	학교·학년별집단프로그램	생명사랑 의식 함양	80건	110건	138
	청소년 자해예방 및 생명존중인식도검사(ASAP)	학생	6건	진행중	진행중
자료개발	마음건강 및 극단적 선택 예방 교육자료개발	학생, 교사	2건	진행중	진행중

【붙임 2】

관 계 법 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2019. 1. 15.>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3. 삭제 <2022. 2. 3.>

②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2. 2. 3.>

1.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 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

③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자살예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살시도자등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는 자살시도자등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로 한다. <개정 2019. 1. 15., 2022. 2. 3.>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상담등의 지원을 제공할 때 당사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안내하고 당사자가 이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 및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⑥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시도자등에 대하여 상담 등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내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2. 2. 3.>

⑦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자살시도자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담당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기관에서 동일한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2. 2. 3.>

⑧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 절차·방법, 제4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방법, 제6항에 따른 보고 및 제7항에 따른 담당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2. 3.> [본조신설 2018. 12. 11.]

제2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1. 15., 2022. 2. 3.>

□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단순행정 관리사무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 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거나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

탁 및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연례 반복적 사업, 위임기관이 승인한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상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교육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생명존중문화 조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이하 이 조에서 “캠페인”이라 한다) 등 계도 활동을 통해 생명존중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